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공무원(보안직) 공개채용 공고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는 공무원(보안직)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공무원(보안직)

※ 시보기간 3개월 운영 후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공무원(무기계약직) 정규 임용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계	거창지사 보안직 주임(가)	통영지사 보안직 주임(가)	동래금정지사 보안직 주임(가)
채용인원(명)	3	1	1	1
임용예정일		2026. 1. 2.(금)	2026. 1. 2.(금)	2026. 2. 2.(월)

※ 채용분야별 채용 공고건에 대하여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분야 전체 '불합격' 처리합니다.(3개 분야 중 1개 분야만 지원 가능)

□ 수행업무

구 분	수행 업무
보안직 주임(가)	<p><거창지사·동래금정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 및 외부인 차량통제 및 안내, 사옥 출입통제 및 수시순찰 (출입문 시건 등)• 비상사태 시 응급대응, 계절별 공동업무 지원 및 업무분장으로 부여 받은 업무 수행 등 <p><통영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 및 외부인 차량통제 및 안내, 사옥 출입통제 및 수시순찰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출입문 시건 등)• 비상사태 시 응급대응, 사옥 외부 청결 유지관리, 계절별 공동업무 지원(사옥주변 환경정비, 조경업무 등) 및 업무분장으로 부여받은 업무 수행 등

□ 지원자격 (접수마감일 2025. 11. 17. 기준)

구분	지원자격
보안직 주임(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성별·학력 등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 이상자는 제외) * 보안직: 만 65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 참고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경비업법」 제10조의 결격사유 참고 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관련 분야 유경험자 우대

※ (경력산정) 지원한 분야의 경력에 한하여 30일을 1개월로, 365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다수인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되, 근무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

□ 우대사항(접수마감일 2025. 11. 17. 기준)

구분	대상자	증빙서류	적용 단계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이 4명 미만 채용으로 동점자 발생 시 우대하되, 응시자 수가 1명인 경우 가점 적용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쏠전형	5/10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쏠전형	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서류전형	5
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수급자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서류전형	5
북한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본인 명의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북한이탈 주민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 이상인 경우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기본증명서(상세)	서류전형	5
다문화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귀화한 본인·배우자·자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자녀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서류전형	5

구분	대상자	증빙서류	적용 단계	가점
자립준비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복지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 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사람 * 거창지사 보안직·통영지사 보안직: 1991. 1. 3. 이후 출생자 * 동래금정지사 보안직: 1991. 2. 3. 이후 출생자 	보호종료 확인서,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등	서류 전형	5
의사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사상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인 경우)	서류 전형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3
공무직 (시설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공단에서 공무직(시설직)으로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근무성적평정표 상 '미흡' 평가를 받지 않은 사람 * 근무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은 제외하며, 단시간 근로의 근무기간 환산은 근무일수 기준으로 산정 	4대보험 증명서, 경력증명서	서류 전형	5

※ 각 가점의 기간 산정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025. 11. 17.)을 기준으로 함

※ 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2. 근로조건

근무장소: 본인이 지원한 공단 지사

구분	거창지사	통영지사	동래금정지사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3길 56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신죽3길 16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82

※ 지사 위치는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참조

□ 근무시간

채용분야	근무시간
거창지사 보안직 주임(가)	• 1일 8시간(08:00 ~ 17:00),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1일 8시간 범위 내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통영지사 보안직 주임(가)	• 1일 8시간(09:00 ~ 18:00),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1일 8시간 범위 내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동래금정지사 보안직 주임(가)	• 감시·단속적 근로 형태로 운영 중인 기존 교대근무 방식 준용 ※ 교대근무는 2교대로 하되, 사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정년: 보안직 만 65세

□ 보수월액

구분	보안직 주임(가)
연봉월액	2,360,000원

- ※ 교대근무자가 근무편성표에 의하여 야간에 근로한 경우에는 야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수당 지급함(교대근무 유형에 따라 수당내역 상이)
- ※ 식비, 명절휴가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자격수당, 가족수당 등 추가 지급되는 수당은 없으며, 경영평가성과급, 복지포인트, 단체보험은 별도임
- ※ 경력증명서는 자격요건 및 경력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제출받는 것이며, 공무원의 연봉제를 적용함에 따라 호봉산정과는 무관함

3. 전형절차 및 일정

구분	내용	일정
지원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방법: 채용사이트(https://nps.recruiter.co.kr) 접수 ※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불가하며, 접수 마감 이후 입사지원서 제출 불가 •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025. 11. 10.(월) ~ 11. 17.(월), 18:00까지
서류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 충족여부, 경력,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채용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자기소개서는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불성실 작성자는 불합격 처리 ※ 합격선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선발하되 동점자 중 취업 지원 대상자가 있는 경우 우선 선발 	<합격자 발표> 2025. 11. 25.(화) 개별 안내

인성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인성검사 미참여자는 면접전형에서 제외 검사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어 참고자료로 활용 	2025. 11. 25.(화) ~ 11. 27.(목) 개별 안내
면접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 안내 방법: 채용분야별 조별면접(1개조 5명 내외, 조별 40분 내외) 실시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5px;"> <p>[채용 예정인원을 초과한 합격선 동점자 처리기준]</p> <p>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사람 ④ 면접전형에서 우선되는 평정요소의 점수가 높은 사람</p> </div>	2025. 12. 1.(월) 개별 안내
최종 합격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전형 합격자 중 채용분야별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분야별 예비합격자 각 2명 선발 	2025. 12. 5.(금) 개별 안내
임용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용 후 3개월간의 시보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공무원(무기계약직)으로 정규 임용 	<거창지사 통영지사> 2026. 1. 2.(금) <동래금정지사> 2026. 2. 2.(월)

※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내역(면접전형 시 제출)
경력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2개 서류 모두 제출 ① 입사지원 시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 전체 ② 4대보험 가입증명서 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1종 ※ 입사지원 시 경력사항에 기재한 사항이 경력(재직)증명서를 통해 관련 분야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증명서 이력과 일치하여야 인정됨 (경력·재직증명서 상 해당업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 불가 및 폐업 등으로 인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경력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 ※ 경력증명서는 자격요건 및 경력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제출받는 것이며, 공무직은 연봉제를 적용함에 따라 호봉산정과는 무관함
우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하여 아래 서류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사상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 우대사항 증빙서류는 접수마감일(2025. 11. 17.) 이후 발급한 원본 제출

5.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격, 경력, 우대사항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2025. 11. 17.)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라 서류전형 시 지원자가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면접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성명, 생년월일(연령), 성별,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혼인여부 등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및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추후 증빙서류와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응시자격 또는 임용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일에 무단결근하면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무원 최종합격자는 3개월 기간의 시보로 임용되며,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임용됩니다.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취소·포기 등으로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채용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재직 중에는 4대보험 적용 여부 불문하고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임용일 전 4대보험 퇴사 완료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폐업등록 완료 필요)
- 최종 합격되지 않은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2025. 12. 5. ~ 12. 22.)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이메일(recruit2111@nps.or.kr)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불가

- 채용 일정은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입사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부산지역본부(051-797-7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1. 10.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경비업법」 제10조에 따른 결격 사유

1.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형법」 제114조의 죄
 -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